

1. 법무부고시 제2017-116호

「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」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(E-2)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6월 28일

법무부장관
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(E-2)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 고시

1.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

- 필수검사항목 : 필로폰(MA), 코카인(COC), 아편(OPI), 대마(THC)
- 검사방법
 -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*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,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(GC-MS) 등으로 2차 확진검사
 - * 마약류 진단 시약은 식약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-의약품-정보마당-제품정보 (<http://ezdrug.kfda.go.kr/kfda2>)에서 확인 가능
 -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, 보건복지부 고시(제2010-38, 10.6.11. 개정) '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'의 부록 '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'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검사 실시

2.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신청·지정절차 등

- 지정요건
 -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(GC-MS) 등으로 필로폰(MA), 코카인(COC), 아편(OPI), 대마(THC) 등 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*
 - *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·보건의료원
- 신청 및 지정절차
 -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

- ※ 첨부서류 : ① 사업자등록증 (신청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) ② 보유 마약검사 장비 및 진단시약 목록(신청서 기재로 같음, 위탁의료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료 목록과 수탁기관 정보 등을 기재)
- 사무소장 등은 신청 의료기관이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'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'를 발급·교부
- ※ 사무소장 등은 신청의료기관의 요건구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3.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 및 지정취소

○ 지정 의료기관의 의무

- 지정요건과 의료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하여야 함 (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 기준)
- 별지서식 채용신체검사서의 '검사내용'과 마약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, '기타'란에 마약검사 결과(검사방법·검사기관 포함)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
- 1차 면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를 실시하거나 확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
-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15일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고 '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서'를 반납하여야 함

○ 지정 의료기관의 취소사유 등

-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필수 마약검사항목·검사방법·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한 경우
-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자진하여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를 반납한 경우
- ※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(휴·폐업 및 자진반납 사유 제외)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

4. 시행일 : 2017년 7월 3일

- ※ 법무부고시 제2011-23호는 2017년 7월 3일부로 폐지한다

3.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

제 호

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서

1. 의료기관 명칭 :
2. 소재지 :
3. 사업자등록번호 :
4. 대표자 성명 :
5. 지정조건

가. 법무부고시 제2017-116호에 정한 지정요건과 의무사항 및 의료
관련 법령절차를 준수하여야 함

나. 상기 '가'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며, 1년 이내
에는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
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별표5의2 및 「법무부고시
제2017-116호」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법무부장관 [인]

4. 채용신체검사서

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지정 번호 :

채용신체검사서

제 호

성명 Name	생년월일 Date of Birth	사진 (3cm × 4cm)
근무처 Employment Place	전화번호 Phone Number	

검사내용

신장	cm	체중	kg
흉위	cm	혈압	
(교정)시력	좌 : () 우 : ()	색신 (색각)	(교정)청력 좌 : () 우 : ()
안질환		이비인후질환	
치아		호흡기질환	
간질환		신경질환	
소화기질환		피부질환	
순환기질환		정신질환	
비뇨기질환		혈청검사(매독)	
흉부X선검사			

마약검사

필로폰	코카인	아편	대마	기타
-----	-----	----	----	----

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인)

검사결과 합격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합격 <input type="checkbox"/> 불합격 <input type="checkbox"/> 판정보류	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
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

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 (인)